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의 회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5. 10.

발 의 자 : 오 수 봉 의원(인)

1. 개정이유

-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변경함
 -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을 연간 15만원이내(안제5조제2항제2호)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외 :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을 연간 10만원이내(안제5조제2항제3호)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7. 입법예고 결과

8. 부서협의 결과

9. 기타 참고사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차상위계층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② (생략)</p> <p>1. (생략)</p> <p>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차상위계층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u></p> <p>3. <u>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